

서울특별시 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1.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여 구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다. 피해방지지원, 금융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라. 사업비 보조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66 팩스 : 02)3396-9055
- E-mail : moonsun1004@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을 활용하는 등 금융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사업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 발굴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금융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보조)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 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보·경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 ②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3항에 따라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